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과 그 근거규정으로서 Decision No 1622/2006/EC[1)]

정보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팀

I.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발단과 전개

1. 발단

유럽연합(European Union)차원에서 '문화'라는 가치영역의 보존, 개발을 위한 법·정책적 노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정책관련 주요국으로서 미국과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이 새로이 중심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느린 혹은 늙은(alt)지역으로 비하되기도 하는 유럽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문학, 학문적 힘을 빌려 불변의 유럽적 가치를 상정하는데 "문화"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점차 확대되어가는 유럽연합회원국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코드가 바로 문화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현실에 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석 가능하다.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2)] 프로그램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유럽연합내의 이벤트로서, 이를 처음으로 제안한 이는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 1920~1994)[3)]이다. 그녀가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85년 6월 유럽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유럽의 문화수도 제도를 발의해서 채택되었다. 그 후 다양하고 풍부한 유럽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유럽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1) 정식명칭: Decision No 1622/200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2006 establishing a Community action for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event for the years 2007 to 2019

2) 독일어로 Kulturhauptstadt Europas, 처음에는 유럽의 문화도시(European Cities of Culture)라는 명칭으로 정해졌으나 1999년부터 유럽의 문화수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3)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대중적인 명성을 떨쳤으며 동시에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과 국회의원으로서 유럽의 문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1981년부터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한 그녀가 남긴 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문화수도인 것이다.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모토아래 1985년부터 해마다 회원국의 도시들이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고 있다.

2. 전개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본 행사를 유치해 내부적으로는 유럽인들의 문화적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해왔다. 유럽문화수도(Cultural Capital of Europe) 행사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국제 영화제, 미술전, 연극제, 사이버 문화제, 민속축제, 문학 심포지엄 등과 같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문학 등 전 문화예술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시민이 동참해 이루어지는 유럽문화수도 이벤트는 유럽통합과 함께 이루어 지는 하나의 축제로서 시민들에게 문화의식 고양과 더불어 역사적 자긍심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에게는 자신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표 1〉 현재까지 지정된 유럽문화수도

	지정도시		지정도시
1985	아테네 (Athens)	2005	코크 (Cork)
1986	플로렌스 (Florence)	2006	파트라스 (Patras)
1987	암스테르담 (Amsterdam)	2007	시부 (Sibu) 룩셈부르크 (Luxembourg)
1988	베를린 (Berlin)		
1989	파리 (Paris)	2008	리버풀 (Liverpool) 스타방게르와 산네스 (Stavanger and Sandnes)
1990	글라스고 (Glasgow)		
1991	더블린 (Dublin)		
1992	마드리드 (Madrid)	2009	린즈 (Linz) 빌니우스 (Vilius)
1993	앤트워프 (Antwerp)		
1994	리스본 (Lisbon)	2010	이스탄불 (Istanbul) 펙 (Pecs), 에쎈 (Essen)
1995	룩셈부르크 (Luxembourg)		
1996	코펜하겐 (Copenhagen)	2011	투르쿠 (Turku) 탈린 (Talinn)
1997	테살로니끼 (Thessaloniki)		
1998	스톡홀롬 (Stockholm)	2012	기마레스 (Guimaraes) 마리보 (Maribor)
1999	바이마 (Weimar)		
2000	아비뇽 (Avignon) 베르겐 (Bergen) 볼로냐 (Bologna) 부루셀 (Brussels) 헬신키 (Helsinki) 크라쿠프 (Krakow) 프라하 (Prague) 레이캬비크 (Reykjavik) 산타이고데스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	2013	프랑스 (France) 슬로바키아 (Slovakia)
		2014	스웨덴 (Sweden) 라트비아 (Latvia)
		2015	벨기에 (Belgium) 체첸공화국 (Czech Republic)
		2016	스페인 (Spain) 폴란드 (Poland)
		2017	덴마크 (Denmark) 싸이프러스 (Syprus)
2001	로테르담 (Rotterdam) 포르토 (Porto)		
		2018	네덜란드 (Netherland) 말타 (Malta)
2002	부뤼헤 (Bruges) 살라망카 (Salamanca)	2019	이탈리아 (Italay) 불가리아 (Bulgaria)
2003	그라츠 (Graz)		
2004	제노바 (Genova), 릴 (Lile)		

Ⅱ. 유럽 문화수도 사업의 목적과 현재

이러한 문화수도 지정을 통한 유럽연합의 문화 전략은 크게 세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상호간의 교류촉진

유럽 연합의 확대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 회원 국가들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랜 문제인

식과 그 극복 노력은 세계화를 뛰어넘는 지구화라는 시대적 발전이념의 인식 속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 되고 하나의 경쟁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그 문화가치를 개발하고 경제화 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것도 당연하게 보여진다.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한가지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4억 유로를 투자하여 공동의 문화유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문화공간(European Cultural Space)를 개발 보조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이면에는 각 회원국간 문화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노력도 엿보이는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기반의 생산물과 작품 등의 유럽 내 순환도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순기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표 2〉 EU 각 회원국별 문화영역 종사자수(Cultural employment in total employment)

고용수 (단위 100명)			
	문화영역	전체	퍼센트(%)
EU-27	4 940.3	208 945	2.4
BE	88.4	4 212	2.1
BG	53.4	3 008	1.8
CZ	93.7	4 739	2.0
DK	82.4	2 737	3.0
DE	1 003.9	36 179	2.8
EE	19.2	609	3.2
IE	47.9	1 929	2.5
EL	92.4	4 382	2.1
ES	389.8	18 893	2.1
FR	487.9	24 312	2.0
IT	464.4	22 650	2.1
CY	7.8	348	2.2
LV	27.5	1 028	2.7
LT	36.3	1 453	2.5
LU	3.5	193	1.8
HU	79.8	3 891	2.1
MT	3.4	148	2.3
NL	305.8	8 112	3.8
AT	88.6	3 754	2.4
PL	231.3	13 947	1.7
PT	69.8	5 132	1.4
RO	97.8	9 298	1.1
SI	22.2	947	2.3
SK	40.3	2 196	1.8
FI	79.3	2 418	3.3
SE	153.5	4 357	3.5
UK	870.0	28 072	3.1
HR	30.0	1 531	2.0
IS	6.0	157	3.8
NO	48.0	2 212	2.2
CH	104.6	3 945	2.7

출처: Eurostat, EU Labour Force Survey, 2005

4) 리스본 아젠다(Lisbon agenda)라고도 불리며, 2010년까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0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합의, 서약한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말한다. EU는 리스본 전략의 추진에 평생학습을 포함한 교육훈련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개선하고 새로운 필요 능력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시스템을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합의하에 리스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분야의 전략으로, 3대 전략목표와 13개 실행계획이 설정되었으며, 매 2년마다 진척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참고: http://en.wikipedia.org/wiki/Lisbon_Strategy), (http://ks.hmall.com/pf/top/qa_detail?eid=06NJC).

〈표 3〉 2006년 EU의 대외 문화관련상품 수출입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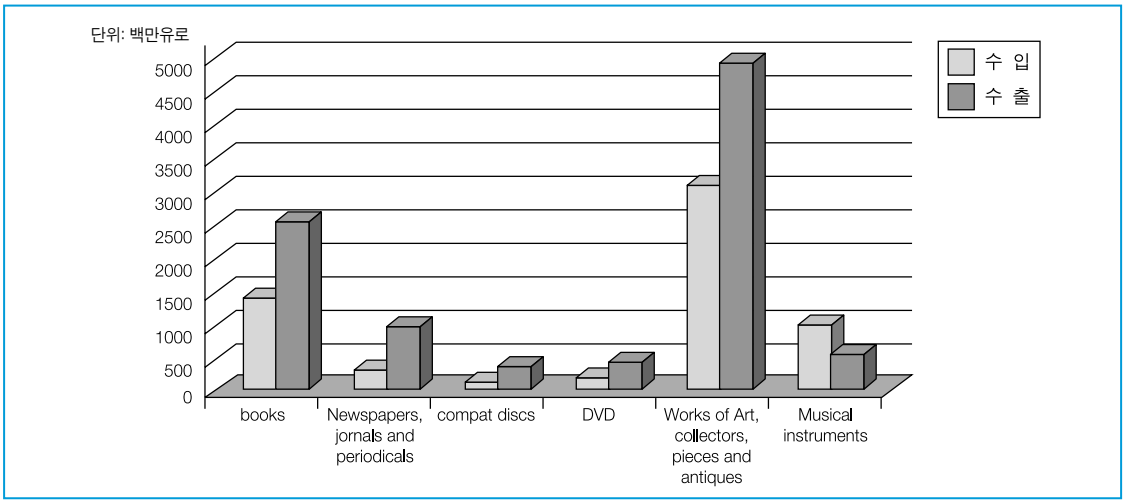

출처 : Eurostat, Comext (2007)

2.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4]에 근거한 창조와 혁신의 촉매제로서 문화의 이용

문화와 그 관련 영역(음악, 미술 등)산업 등이 유럽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2003년도 자료를 따르면 이 부분에서 653억 유로 가치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당시 유럽연합 GDP의 2.6%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부문 종사자는 5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2000년에 세운 리스본 전략에 따른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전에 있어 문화영역은 그 기초 체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EU의 문화적 상호주의의 신장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유럽연합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촉진에 대한 협정(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5]을 수용할 것이다. 그 이전에 유럽연합은 본 문화전략을 통해 유럽내부의 다양성에 스스로를 개방함과 동시에, 전세계의 상대국가들의 다양성도 인정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문화 통합과 교류를 통한 활발한 논의와 파트너쉽 체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정식명칭: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자료: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29/142919e.pdf)

Ⅲ. 유럽문화수도의 근거규정과 그 내용

1. Decision 1622/2006/EC[6]

유럽문화수도의 규정들을 살피려면, 엄밀하게 2012년까지와 2013년 이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2012년까지의 문화도시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Decision 1419/1999/EC[7]에서 이루어 졌고, 이는 Decision 649/2005/EC[8]를 통해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내용은 2012년까지와 20013년 이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결정이 기존의 결정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개정된 Decision 1622/ 2006/EC의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2. 각 조항구성

본 결정의 각 조항 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제(Subject matter)
제2조 본 운동에 접근
(Access to the action)
제3조 신청(Applications)
제4조 문화적 프로그램들의 범위
(Criteria fort he cultural programme)
제5조 신청서의 제출
(Submission of applications)
제6조 선정위원 (Selection panel)
제7조 예비선정 (Pre-selection)
제8조 최종선정 (Final selection)
제9조 지명 (Designation)
제10조 감시와 권고위원
(Monitoring and advisory panel)
제11조 수상 (Prize)
제12조 평가 (Evaluation)
제13조 철회 (Repeal)
제14조 경과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제15조 효력발생 (Entry into force)

3. 주요내용

(1) 적용되는 문화프로그램들의 범위

문화수도 이벤트가 정해진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문화수도로 신청 가능한 도시나 프로그램의 특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결정 1622/2006/EC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통해,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거나 예시하는 방법이 아

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6:304:0001:0006:EN:PDF
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NSLEG:1999D1419:20040501:EN:PDF
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5:117:0020:0021:EN:PDF

닌 두 개의 포괄적은 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유럽차원의 이벤트 일것(the European Dimension)"이며 두 번째는 "도시 그리고 도시민(City and Citizen)" 이다.[9]

A. The European Dimension

신청도시는 유럽의 문화영역에 있어 스스로의 역할, 유럽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위치 자체로서 유럽이라는 공동체로의 소속감 등을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치러진 프로그램들로 미루어 보아 유럽차원(European Dimension)의 개념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 특징중의 하나는 이벤트의 주제 자체가 그러한 경우[10]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이벤트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방법이 그러한 경우[11]이다.

B. City and Citizen

"도시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내용의 특히 도시인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유럽시민을 포함함은 물론이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도시 주변의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12] 결정 1622/2006/EC의 제4조 제2항에서 해당 이념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rt. 4

도시와 도시민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은,
(a) 도시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과 그 이외의 지역인들의 관심을 고무시키도록 해야 한다.
(b) 지속적이어야 하고 장기적인 도시의 문화와 사회발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2) 문화수도의 선정방법

통상 문화수도의 선정은 관련회원국가의 준비, 신청과정을 거쳐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평가작업 그리고 각료이사회의 지정으로 마무리된다. 유럽연합 회원국가와 도시가 문화수도를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문화 부문의 전문가 7인과 회원국이 선정한 위원 6인을 합한 총13인으로 이루어진 선정위원단을 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유럽각료이사회(Council)가 유럽문화수도를 최종 선정할 수 있는 단일 선정기관이며, 선정과정은 결정(Decision)문으로 규정된다. 다음에 살펴볼

9) 제4조

10) 예를 들어, 2007년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프로그램 타이틀은 "Great European Personalities"이었고, 2009년 빌리누스(Vilnius)의 타이틀은 "European Baroque Dialogues"이다.

11) 2004년 제노바(Genova)에서는 타이틀 "Theatres of Europe"로 진행된 행사는 구성면에서 예술계와 문화계 등 서로 다른 국가들에 기반을 둔 그룹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12) 제4조 제2항 a.

내용은 Decision 1622/2006/EC에 규정된 선정 방법의 과정으로서 해당 결정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A. 신청서의 제출(Submission of applications)

신청서제출을 위한 공지(Call)는 관련회원국가[13]에 의해 최소 행사시작 6년 전에 출판되어야 하고, 신청서 제출을 위함 마감일은 최소 그 알림의 출판 후 10개월이 지나야 한다(제5조 제1항). 이는 각 도시들이 신청서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청서들은 관련회원국에 의해 집행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B. 선정 위원회(Selection panel)

각 관련회원국가, 각 신청국을 위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신청도시의 신청서를 평가한다. 각각의 선정위원회는 관련회원국에 하나의 도시를 선정한다(제6조 제1항). 각 선정위원회는 13인의 구성되며, 그 중 7인은 본 결정 동조 제4항에 언급된 유럽연합의 기관에 의해 지명된 자여야 하고, 그 외 6인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관련회원국에 의해 지명된다. 관련회원국은 선정위원회를 지명하고, 그 선정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자중에서 그의 의장을 임명한다(동조 제2항). 추가적으로,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도시와 감안된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독립된 전문가이어야 한다(동조 제3항). 제6조의 제4항에는 각 유럽연합기관별로 선정위원을 지정하는 숫자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Art. 6

1….

2….

3….

4. 유럽연합의 기관은 다음과 같이 3년 단위로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한다. 유럽의회에 의해 2인, 이사회에 의해 2인, 집행위원회의 의해 2인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의해 1인이 지명된다. 예외적인 경우, 결정이 유효한 첫1년 내에 집행위원회는 1년 기간의 2인, 유럽의회는 2년 기간의 2인, 이사회는 3년 기간의 2인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3년 기간의 1인의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C. 예비선정(Pre-selection)

각 관련회원국은 늦어도 행사 시작전 5년 내에 예비선정회의를 위하여 제6조에 언급된 해당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제7조 제1항). 선정위원회는 동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13) 결정의 규정에는 Member states concerned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유럽문화수도 선정에 있어 이해 관계를 가진 회원국 즉, 유럽문화수도행사의 신청국 또는 지원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제출된 각 도시들의 신청서를 평가한다.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평가 단계로 올라가는 도시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신청도시들의 신청서에 대한 보고서와 짧은 추천도시 목록을 작성한다(동조 제2항). 선정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관련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각각의 관련회원국은 선정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해 작성된 도시목록에 대해 승인해야 한다(동조 제3항).

D. 최종선정(Final selection)

선정위원회의 목록에 포함된 지원도시들은 그들의 신청서를 마무리하고 관련회원국들에게 전송하고 그 후 그 신청서들은 집행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각 관련회원국들은 예비선정회의 후 9개월 후에, 최종선정을 위해 해당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동조 제2항). 선정위원회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아, 목록에 포함된 지원도시들의 개선된 프로그램들과 예비선정회의에서 작성된 추천서들을 평가한다(동조 제3항). 선정위원회는 목록에 있는 지원도시들의 프로그램과, 유럽문화수도로서 선정될 도시에 대한 추천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해 보고서에는 선정될 도시에 대한 권고서를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될 경우 해당 년도에 이루어져야 할 과정과 정비사항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관련회원국가와 집행위원회에 제출되고 집행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출판된다(동조 제4항).

E. 지정(Designation)

각 관련회원국은 유럽문화수도로 하나의 도시를 지명하고 이를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알려야 한다. 이는 최소한 이벤트가 시작하기 4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지(Notification)는 선정위원회 보고서에 기반한 선정임을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도시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의 추천서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유럽의회는 관련회원국의 지명을 수령하기 최소 3개월 전에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유럽각료이사회는 공식적으로 해당년도의 유럽문화수도 도시를 지정한다(동조 제2항 제3항).

(3) 모니터링(Monitoring)과 권고(Advisory)

당해 결정은 또한 이벤트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니터링(monitoring)과 권고를 위한 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

A. 위원회 구성

위헌회의 인적구성은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사회(Council), 집행위원회(Commission)와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에 의해 지명된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관련 회원국은 본 위원회에 참관자(Observer)를 지명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B. 업무

감시위원은 행사의 준비과정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당해 프로그램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제10조 제1항). 이를 위해 해당 도시들은 당해

위원의 회의가 있기 전 최소 3개월 전에 집행위원회에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집행위원회는 감시위원과 관련도시의 대표를 소집한다. 감시위원은 문화수도 이벤트를 유럽차원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력적 관점에서 행사의 준비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2번 소집된다. 첫 번째 회의는 최소한 행사의 2년 전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행사의 8개월 전에 이루어진다(동조 제4항). 각 회의 이후에, 감시위원은 행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Ⅳ. 유럽문화수도 이벤트의 의미와 시사점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이벤트는 유럽연합 내에 존재하는 단순히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도시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것은 아니다.[14]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유럽영역내의 거시적인 이벤트로 이해해야 한다. 즉, 기존의 도시와 그 문화유산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 유럽 내 지역에 산재하는 또 다른 도시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본 이벤트를 통해서 당해 도시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창안한 멜리나 메르쿠리는 "문화야말로 그리스의 중공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럽문화수도를 유치한 도시는 1년 동안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수가 4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극단적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해당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확대 생산해 낸다는 점일 것이다. 유럽의 현재적인 노력이 앞으로 문화국가로 발돋움 하려는 한국의 계획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리라 기대한다.

석 종 욱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4) 아울러 유럽의 문화수도 이벤트는 단순히 유럽 도시들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4년 프랑스의 릴(Lille)에서는 특히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와 긴밀해지고 경제관계가 문화수도 행사에도 반영되었으며, 한편 이탈리아의 제노바(Genova)에서는 해당 도시와 자매결연 상대도시인 일본의 아오모리현과 관련된 전시회와 문화행사가 대거 포함되었다. 즉,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 혹은 지방과 관련있는 세계 각지의 문화가 소개됨으로써 유럽의 문화수도 행사는 단지 유럽연합회원국내의 이벤트를 넘어 문화간의 열린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